

차량구역,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 이외의 화물구역에서의 차량 운송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규칙 8편 방화 및 소화	2020년 1월 1일(건조일 기준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Res.MSC.421(98)) 개정사항 반영

○ 개정 사항

모든 선박에서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연료를 적재한 차량은 다음의 조건이 준수된다면 차량, 특수분류구역 혹은 로로구역 이외의 화물구역에서 운송될 수 있음.

- (1) 화물구역 내에서의 차량 운행은 금지된다.
- (2) 화물구역이 12장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3) 운반되는 차량이 SOLAS VII/1.1에 정의된 IMDG 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○ 영향 분석

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해당 사항 없음.

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해당 사항 없음.